

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과정

- 가. 제출일자: 2023. 11. 9.
- 나. 제 출 자: 서구청장
- 다. 검토기간: 2023. 11. 10 ~ 11. 17. (8일간)

2. 근거법령

- 가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91조 제91조의2
- 나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2
- 다. 「자연·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

3. 주요 내용

- 가.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구 지명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을 정비(안 제2조)
- 나. 지명위원회 구성기준 변경: 지명업무 담당 국장 → 부서장(안 제3조)
- 다.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등과 상위 조례인 「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.

- 안 제2조제2항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기존에 자연지명, 인공지명 구분하여 제정, 변경, 폐지 또는 조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명의 제정·변경·폐지로 하고,
안 제3조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명을 관장하는 국장에서 지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임

- 그 밖에 부적절한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상위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.